



2002. 7. 1. 시행

## 제조물책임(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 + 손해발생 →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

-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합책임(PL법)으로 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
- 미국('63),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 등 30여 개국은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 2.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동 법의 대상이 아님
- 민법 제 99조 2항에 동산은『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민법 제 98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과 미가공 농·수산물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을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된다.

####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 ▶ 제조물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 공급업자(판매·대여 등)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 ※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 4. 결함이라 함은?

당해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최근 법원판례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5.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조물을 공

### 「예상되는 PL 사고사례」

구 분	내 용
설계상의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난청이 되는 경우</li><li>② 자동 개폐되는 문에 유아가 목이 끼여 질식사하는 경우</li><li>③ 자동차 운전 중 본네트가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li><li>④ 유아가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li><li>⑤ 자동차의 자동 개폐창에 어린이의 목이 끼여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⑥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을 부패시킨 경우</li><li>⑦ TV에서 돌연 불이 나 집을 전소시킨 경우</li><li>⑧ 물안경을 쓴 채로 풀에 다이빙을 했는데 안경이 깨져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⑨ 화장품에 의하여 피부병이 생긴 경우</li></ul>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핸들이 꺾여 큰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② 의사의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③ 통조림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병에 걸린 경우</li><li>④ 자전거를 타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전복되어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⑤ 자동차 주행중 허터의 호스가 빠져 실내에 뜨거운 물이 흘러져 화상을 입은 경우</li><li>⑥ 전산실의 에어콘이 돌연 기능을 정지해 온도가 올라 데이터가 망가진 경우</li><li>⑦ 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들어있는 금속이나 뼈에 입을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li></ul>
경고·지시의 불비가 문제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향수를 양초에 뿐렸는데 돌연 발화하여 어린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li><li>② 휴대용 전화를 3년간 사용한 결과 뇌종양이 생긴 경우</li><li>③ 어린이가 베이비 오일을 잘못 마셔 뇌장해를 일으킨 경우</li><li>④ 다 쓴 라이타를 차인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li><li>⑤ 렌트카를 사용 중 X선이 누출되어 성불능이 된 경우</li><li>⑥ 맥주를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콜중독증이 된 경우</li><li>⑦ 포도당을 마신 어린이가 탈수증상을 일으킨 경우</li></ul>

※ 제조물 책임대책 매뉴얼(2001. 한국PL센터)에서 발췌

## [산업정보2]

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면책특약은 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한다.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

### 8. 민법의 규정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과실책임주의에 기한민법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제조물책임 제도를 도입한 것임.

### 9.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 시행 일 :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적용대상 :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여기서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II. 기업의 PL 대응방안

### 1. PL 예방을 위해서는

▶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 법규제나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비용보다 개발단계에서 안전 대응이 결과적으로 비용 최소화의 길이라는 인식

▶ 전사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사, 각 공장마다 제품안전시스템 구축

-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 세부규칙과 매뉴얼 정비

- 전 사원에게 PL법의 내용 · 대응방안 교육

▶ 제품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설계상 결함의 예방대책

- 제조상 결함의 예방대책

- 지시 · 경고상 결함의 예방대책

### 2. PL 방어를 위해서

▶ 민원상담창구의 활성화

- 사내에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 클레임에(배상청구) 대하여 진지하게 상담하는 창구를 갖추어야 한다.

▶ 리콜체제의 정비

-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 사고 정보의 피드백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재발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소송대응체제 · 조기화해제도의 확립

- PL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송대응체제를 정비하고,

- 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을 활용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조기화해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PL보험가입 등을 통한 위험의 분산

- PL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 III. PL 주요사례

#### 「미국사례」

평결년월 법원	피고회사(제품)	평결 내용	사고내용과 원고의 주장
1963.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YuBa사 (다목적전동공구)	6.5만 달러	작업 중 갑자기 나무조각이 기계로부터 튕겨 나와 얼굴에 종상을 입음. 제조업자의 엄격 책임을 인정
1973. 연방형소법원	11개사 (석면)	5.8만 달러	공업용 단열처리 작업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흡인하여 폐암에 걸림. 제조업자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 의무가 있음
1982. 10 연방대법원	H공업(경자동차)	배상금 582.5만 달러	대형차와 충돌로 운전중이던 여성이 하반신 불구가 됨. 충돌시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2. 11 텍사스주 지방법원	Y사(오토바이)	화해금 700만 달러	다른 차와 충돌할 때 가솔린탱크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어 보행불능이 됨
1983. 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N사(자동차)	배상금 935만 달러	뒷차에 추돌되어 후부좌석에 던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3. 10 플로리다주 항소심	T사 (자동차)	배상금 500만 달러	추돌된 때에 연료탱크의 뚜껑이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숨졌음
1984. 위싱턴주 항소심	Y사 미국법인 (오토바이)	배상금 1,000만 달러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애를 입음
1986. 4 텍사스주 지방법원	H공업 미국판매자회사(1인용차)	화해금 650만 달러	1인용 차가 뒤집어져동승자의 하반신이 마비됨. '2인 승차금지'라는 리벨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
1994. 엘라베마주 연방지방법원	다우코닝사등 (실리콘)	화해 다우코닝사등 3사가 40억달러 기금 설립	다우코닝사 등이 제조 공급한 가슴성형용 실리콘 주머니가 파열되어 피해 - 12,000건의 소송이 제기 ※ 1992년에 FDA는 사용제한조치, 다우코닝사는 제조중지

#### 「일본사례」

제품	소송가액	피고	피고	제소시기
제설장치	5,124만엔	파이프(pipe) 가공회사	제설 장치의 결함으로 파이프 선단 부분의 눈이 녹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클레이밍.	1996. 8
베이컨(bacon)	95만엔	식품 제조회사	경품으로 받은 베이컨을 먹은 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킴(화해)	1996. 11
학교급식	7,770만엔	지방자치제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으로 사망	1997. 1
성게	3,300만엔	식품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성게에 붙은 균이 원인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음식점으로부터 소송(청구 기각)	1997. 2
합성세제	70만엔	제조회사	부엌용 합성세제를 사용 중 손끝 감각이 없어짐(화해)	1997. 4
주차장 리프트(lift)	1,815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주차장 경영자	임체 주차장에서 리프트에 갇혀 사망(메이커 이외 당사자와 화해, 메이커에 대한 항소는 취하)	1997. 5
귀 미용용품	60만엔	수입판매업자	귀 미용용품을 사용해 귀에 염증 발생(화해)	1998. 1
소프트웨어	1,170만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컴퓨터리스회사	컴퓨터의 처리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세금의 초과 지불 발생	1998. 6
봉합실	4,960만엔	수입판매회사	수술에 사용되어진 봉합실이 파손되어 출혈로 사망	1998. 7
한방약	8,160만엔	수입판매회사	한방약 복용후 만성 위부전 발생	1998. 10
곤약젤리	6,000만엔	제조회사	곤약젤리가 목에 걸려 사망	1998. 10
에어백	2억 1,096만엔	수입판매회사와 수리회사	자동차의 에어백이 갑자기 튀어나와 손가락 골절	1998. 11
전기포트	2,500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넘치려 해서 뚜껑의 개폐 레버에 손을 대었더니 뚜껑이 떨어지고 포트가 넘어져 화상	1998. 12
베이비 수즈(baby shoes)	104만엔	제조회사	매직테이프(magic tape)가 떨어져 신발이 벗겨져면서 넘어짐	1999. 5

※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2000년, 한국표준협회)에서 발췌

##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 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일 2002. 7. 1]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합”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합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합”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합”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합”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02. 7. 1]

제 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 7. 1]

제 4조 (면책사유) 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라는 사실

②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 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시행일 2002. 7. 1]

제 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일 2002. 7. 1]

제 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2. 7. 1]

제 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2002. 7. 1]

제 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2. 7. 1]

##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PL 관련기관 및 단체 현황」

### 1. PL 관련기관

관련기관	PL 추진업무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 PL 지원시책 종합추진	02-2110-529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PL 대책추진 – PL 시스템 구축 자금 우대 – 제품의 안전성제고 기술지원등	02-503-7928
중소기업진흥공단	• PL컨설팅 • PL시스템구축 실무, PL전문가 과정등 교육과정 운영	02-769-6589
한국표준협회	• PL컨설팅 •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등 교육과정 운영	02-369-827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PL 보험 운영	02-2124-3082

### 2. PL 관련 업종별단체

관련기관	분야	전화번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02-3660-1877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	02-554-4146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가스석유기기	031-480-298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제품	02-3476-0271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완구·생활용품	02-864-8913
한국정밀화학공업협회	화학제품	02-782-80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계	02-369-787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02-501-0544

\* 각 단체에서는 관련분야의 PL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PL 센터 설립을 검토중임.